

<p>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22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하였거나 용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p> <p>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안 제8조제7항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5”로 한다.</p> <p>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중 “제12조”를 “제17조”로 한다.</p> <p>제2조를 제2조의2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2조(도매시장의 개설)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도매시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과 거래품목은 별표와 같다.</p> <p>제2조의2(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40%;">정 기 휴 업 일</th> <th style="width: 40%;">영 업 시 간</th> </tr> </thead> <tbody> <tr> <td>양 곡 부 류</td> <td>일요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td> <td>07:00 ~ 18:00</td> </tr> <tr> <td>청 과 부 류 수 산 부 류</td> <td>일요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td> <td>00:00 ~ 24:00</td> </tr> <tr> <td>화 해 부 류 약 용 작 물 부 류</td> <td>일요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td> <td>00:00 ~ 24:00</td> </tr> <tr> <td>축 산 부 류</td> <td>일요일, 법정공휴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td> <td>09:00 ~ 18:00</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기 휴 업 일	영 업 시 간	양 곡 부 류	일요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07:00 ~ 18:00	청 과 부 류 수 산 부 류	일요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00:00 ~ 24:00	화 해 부 류 약 용 작 물 부 류	일요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00:00 ~ 24:00	축 산 부 류	일요일, 법정공휴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09:00 ~ 18:00
구 분	정 기 휴 업 일	영 업 시 간														
양 곡 부 류	일요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07:00 ~ 18:00														
청 과 부 류 수 산 부 류	일요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00:00 ~ 24:00														
화 해 부 류 약 용 작 물 부 류	일요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00:00 ~ 24:00														
축 산 부 류	일요일, 법정공휴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09:00 ~ 18:00														
<p>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중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상장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의”를 “제3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총액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①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p>	<p>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p> <p>③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이 출하자과 매수인으로 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제2항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의 2분의 1로 한다.</p> <p>제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위탁상장수수료”를 각각 “위탁수수료”로 한다</p>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중도매업의 허가 등) ①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도매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중도매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는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경매사 관리 및 매매참가인 신고) ①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에서 도매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매매참가인 신고서를, 그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거래참가증을 발급한다.

④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실수요자로서 도매시장 안에서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주주·임직원 및 그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는”을 “주주 및 임직원은”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도매시장법인”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유통되는 농수산물에 식품위생상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출하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출하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중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시설물관리운영규정”을

“시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⑦시설사용자가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1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0조제1항중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을 각각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중 “개선할”을 “환경을 개선할”로 한다.

제11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대금결제) ①출하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이 위탁매매대금의 결제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의 범위 안에서 그 대금을 지급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매시장법인이 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중 “지정도매법인, 중도매인, 경매사, 매매참가인, 부속영업인”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경매사, 매매참가인, 부속영업인”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권한의 위탁)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사장에 게 위탁한다.

1. 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한 보증금 등의 관리
2.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정기 휴업일 및 영업시간의 조정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 휴업신고의 접수 및 처리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 임면 관련서류, 매매참가인 신고서, 변경신고서의 접수·처리 및 거래참가증의 교부
5. 제8조제1항, 제3항,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 시설의 대리사용, 신·증축 등의 승인, 시설물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 시설사용의 규제에 관한 사항
8.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금결제 청구의 접수 및 처리
9.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10.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 및 감독
11. 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중 위반자에 대한 주의 및 경고 조치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등의 체납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사용료·임대료 및 관리비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과 거래품목

도매시장명	위 치	면 적(㎡)		거 래 품 목
		대 지	건 물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송파구 가락동 600	542,920	261,787	과실류, 채소류, 산채류, 서류 및 유지 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선어류, 패류, 건어류, 활어(내수면어 포함), 염장어류, 해조류 및 젓갈류 조수육류, 난류 및 1차 부산물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부도매시장	서초구 양재동 223	30,027	17,021	양곡류
서울특별시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동작구 노량진동 13-8	18,837	21,594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패류, 해조류 및 젓갈류
서울특별시노량진청과물도매시장	동작구 노량진동 16-1-2	5,000	5,520	과실류, 채소류
서울특별시마장동축산물도매시장	성동구 마장동 766-8	14,416.5	4,462.8	조수육류 및 난류
서울특별시독산동축산물도매시장	금천구 독산동 1007-13	16,383.4	4,416.5	조수육류 및 난류



(별지 제3호 서식)

중도매업 휴업(폐업) 신고서(제4조 관련)				
신청인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명 기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허가번호		상 호	
	주 소	(전화번호 : )		
휴업기간				
휴업(폐업)사유				
<p>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서울특별시시장 귀하</p>				

(별지 제4호 서식)

매매참가인 신고서(제6조 관련)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명 기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참가시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 품목				
<p>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서울특별시시장 귀하</p> <p>첨부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p>					



(별지 제7호 서식)

중도매인(매매참가인)별 거래실적 보고서  
(제15조 관련)

허가번호 (참가증번호)	중도매인 번호	성명	품목		거래실적	
			부류명	품명	수량(kg)	금액(천원)

(별지 제8호 서식)

매수 도매 거래 결과 보고서(제15조 관련)

도매시장법인명					대표자			
기간								
품목	단위	수량	매수가격	판매가격	출하자			
					원산지	출하자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 도매 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